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0,021,207	17,100,636
일반회계	528,385,098	15,851,553
특별회계	41,636,109	1,249,083
공기업특별회계	16,560,794	496,824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6,560,794	496,824
기타특별회계	25,075,315	752,259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214,614	6,438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933,513	148,00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950,409	268,51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00,400	291,012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	1,276,379	38,29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00,000천원으로 한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5,598,11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4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